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52호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3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2
- 훈령 제3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규정 11

공 고

- 공고 제2015- 1299호 도로계획시설[도로 :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17
- 공고 제2015- 1319호 반환기간(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8
- 공고 제2015- 1320호 보상협의 공시송달(소래지구 중2-110호선) 20
- 공고 제2015- 13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능골지구 소2-1호선】사업 실시 계획 열람·공고 21
- 공고 제2015- 13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27
- 공고 제2015- 13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공고 제2015- 13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공고 제2015- 13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53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58

고 시

- 고시 제2015- 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59
- 고시 제2015- 113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61
- 고시 제2015- 1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논현동 765-1번지) 62
- 고시 제2015- 1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논현동 739-1번지) 63
- 고시 제2015- 11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경기장 수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고시 64
- 고시 제2015- 11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단위계획(수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6
- 고시 제2015- 11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단위계획(경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8
- 고시 제2015- 1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0
- 고시 제2015- 1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1
- 고시 제2015- 1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5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7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
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8월 21일

남동구 훈령 제3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남동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나

이에 상당하는 지위의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 보장) ① 공직자는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공직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②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동구청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공직자는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구청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 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인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구청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기관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우리 구에 신고되는 부패행위의 접수·처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예방 및 신고자보호제도의 정착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관장의 책무
 - 규정 제정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기관장의 책무(제3조)
- 신고 상담 접수, 신고의 조사 및 처리
 - 부패행위 신고상담 접수(제6조),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 및 처리(제7조)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 신분비밀 보장(제10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제11조)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8월 21일

남동구 훈령 제3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희롱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청·구의회·직속 기관·사업소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복무관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 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여성업무 담당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

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지침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희롱 사건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한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성희롱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제4조)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시 외부전문가도 가능(제5조)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제6조)
- 성희롱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제8조, 제9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296호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 매소홀로 하수암거』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의 건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수용재결 신청의 건에 대한 열람·공고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매소홀로 하수암거

2.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3.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27번지 일원**4. 공고기간 : 2015. 08. 14. ~ 2015. 08. 28.****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구분	성명	주소	보상대상토지	사유	비고
1	소유자	김**	남동구 구월동 ***-* 태광프라자 ***호	남동구 구월동 827-10	수취인 불명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 -131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8. 20 ~ 2015. 9. 4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32-453-2268)

연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 서	납부자	금액(원)	반환기일
1	보관금-건강보험	2009-07-24	퇴직자(성열*) 건강보험료 정산	총무과	성열*	50,700	2009-08-24
2	보관금-국민연금	2009-11-20	10월분 대체인력 공제	총무과	김아*외 13	24,890	2009-12-20
3	보관금-장기요양보험	2009-11-20	2009년 11월분 장기요양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51,825	2009-12-20
4	보관금-국민연금	2009-11-30	11월 대체인력(국민연금)공제	총무과	김아*외 8명	16,645	2009-12-30
5	보관금-건강보험	2009-12-18	2009.12월 직원건강보험 등	총무과	남동구청장	2,563,460	2009-13-18
6	보관금-고용보험	2009-12-18	2009.12월 고용보험료	총무과	남동구청장	2,119,849	2009-13-18
7	보관금-국민연금	2009-12-30	2009.12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김아*외 9명	19,610	2009-13-30
8	보관금-건강보험	2010-01-08	일제강점하피해사실조사 일시사 역인부임공제	총무과	김희*	23,410	2010-02-08
9	보관금-국민연금	2010-01-08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일시사 역인부임 공제	총무과	김희*	37,080	2010-02-08
10	보관금-건강보험	2010-03-31	2010.3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이진*외 10명	3,900	2010-04-31
11	보관금-건강보험	2010-04-20	2010.4월 직원등 건강보험료 공제	총무과	남동구청장	3,783,880	2010-05-20
12	보관금-기타보관금	2010-02-24	문화회관길 가로등 정비공사 준 공금 보관(업체 미청구)	재무과	(주)원플러스	940,500	2010-03-24
13	보관금-국민연금	2009-07-06	4월분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공제	세무1과	김승*외 4	40,950	2009-08-06
14	보관금-건강보험	2009-08-04	7월분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공제	세무1과	김승*외 4	8,730	2009-09-04
15	보관금-건강보험	2009-09-01	8월분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공제	세무1과	최문*	4,650	2009-10-01
16	보관금-건강보험	2010-04-30	2010.4월 개별주택특성조사 인 부임 공제	세무1과	김승*외 1	3,990	2010-05-30
17	보관금-국민연금	2009-07-01	공공부문일자리나누기 추진	세무2과	남은*외1인	6,300	2009-08-01
18	보관금-기타보관금	2009-07-23	2/4분기 부가세 납부	세무2과	세무1과/일반회계/ 분임경리관	10,000	2009-08-23
19	보관금-고용보험	2009-07-22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임금 공제	교통행정과	김선* 등 22명	40,900	2009-08-22
20	보관금-고용보험	2009-09-01	8월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 임 공제	교통행정과	손보*	4,130	2009-10-01
21	보관금-건강보험	2009-07-27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일반회 계/분임경리관	86,340	2009-08-27
22	보관금-건강보험	2009-08-26	8월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일반회 계/분임경리관	8,270	2009-09-26
23	보관금-건강보험	2009-09-25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공제	공원녹지과	장희* 외 33명	18,300	2009-10-25
24	보관금-장기요양보험	2009-11-25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요양보험) 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녹지팀	42,670	2009-12-25
25	보관금-건강보험	2010-05-07	2010.4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봉급 공제	공원녹지과	고재* 외 25명	1,920	2010-05-07
26	보관금-건강보험	2010-05-26	2010.5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금 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녹지팀	12,300	2010-06-26
27	보관금-국민연금	2010-02-01	2010.1월 불법정광고물 전수 조사 인부임공제	도시경관과	김은* 외 2명	8,200	2010-03-01
28	보관금-건강보험	2010-02-23	2010.2월 공익수익사 공제	농수산개발과	길호*	2,500	2010-03-23
29	보관금-건강보험	2009-10-29	10월분 희망근로자 급여 공제	일자리정책과	김정* 외 1991명	12,430	2009-11-29
30	보관금-건강보험	2009-11-04	10월분 공공근로자 건강보험 추 가분	일자리정책과	박승*	40	2009-12-04
31	보관금-건강보험	2009-11-04	제3기 청년인턴 급여 공제	일자리정책과	박선*외 13명	18,720	2009-12-04
32	보관금-건강보험	2009-12-28	12월분 공공근로자 건강보험	일자리정책과	장선*외 71명	6,040	2009-13-28
33	보관금-건강보험	2010-02-17	공공부문 청년인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일자리정책과	김효*외 52명	255,510	2010-03-17
34	보관금-건강보험	2010-03-05	2010.2월 공공근로자 임금공제	일자리정책과	이호*외 65명	34,230	2010-04-05
35	보관금-건강보험	2010-05-31	2010.5월 희망근로자 임금 공제	일자리정책과	김은* 외 611명	16,900	2010-06-31
계						10,479,769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20호

공 시 송 달 공 고(2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소래지구 중2-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지구 중2-110호선』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3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A=1,872.0㎡ 중 136.0㎡, L=110.0m 중 15m, B=15.0m ~ 18.0m

라. 사 업 기 간 : 2016. 12. 31까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공고기간 : 2015. 08. 21. ~ 2015. 09. 04.(14일)**3. 보상시기** : 2015. 09. 14한.**4. 보상대상**

- 토 지 : 소래지구 중2-110호선(2필지, 28㎡)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구분	성 명	주소	보상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소유자	정*순	남동구 논현동 ***	남동구 논현동111-46	주소불명	미등기
2	소유자	유*동	남동구 논현동 ***	남동구 논현동 111-320	주소불명	미등기

6.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개별 보상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고 제2015-1323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사업 실시계획 열람 · 공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1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로2-1호선, B=8.0m, L=428.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 지 조 서 (1)

소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322-3	전	149	149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2	597-47	도	10,202	998	국	건설부				
3	319-4	전	31	31	신**	인천 남동구 구수골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4	323-6	전	8	8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5	323-5	전	1	1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6	341-1	전	150	150	송**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_** (수산동)	인천**** 협동조합	인천 동구 샛골로*** (송림동),(서창지점)		
7	340-6	전	115	115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8	340-5	전	169	169	김** 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_****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_* (구월동지점)	근저당 권자	
9	342-2	도	30	30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 권자	
10	338-12	도	293	293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 (여의도동)	근저당 권자	
11	338-14	전	146	146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_*				
12	338-13	전	145	145	이**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_* (인천원당지점)	근저당 권자	
13	521-1	전	58	58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번길 (송학동3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 (부평중앙지점)	근저당 권자	
14	501-1	전	225	225	송**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 (충정로1가) (인천용진군지부)	근저당 권자	
15	502-1	전	10	10	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동****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16	519-3	도	71	71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아파트 ***동 ****호	****제조 한국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_*	근저당 권자	
17	512-12	도	57	5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96,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신문로2가)	근저당 권자	
18	518-4	전	34	34	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_*				
소 계				2,690						

용 지 조 서 (2)

소2-1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9	512-13	도	26	26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근저당 권자	
20	518-5	대	5	5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_*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21	513-1	도	98	98	주식회사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송도테크노파크지 점)	근저당 권자	
22	514-3	대	56	56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_** ***호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지상권 자	
23	515-1	대	11	11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 *** 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근저당 권자	
24	산57-1	임	102	102	송** 외 4인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25	산58-4	임	82	82	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번길 ** (주안동)				
26	551-4	전	160	160	차**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27	525-8	전	37	37	대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_*	송**	인천 남구 학익동 **_**	근저당 권자	
28	551-3	전	7	7	송** 외 1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_*				
29	535-2	전	41	41	*** 영농조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30	550-1	전	48	48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_** 희망아파트 *동 ***호				
31	535-3	전	83	83	*** 영농조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 권자	
32	549-3	전	34	34	***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_*				
소 계				790						
총 계				3,480						

지 장 물 조 서 (1)

조서 번호	소재 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량	비 고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수산동	322-3	조경석		m	34.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교목	D10	주	1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윤**
2	수산동	341-1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22.6㎡)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_** (수산동)	송**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_** (수산동)	송**
			창고	저온 저장고	동	1	편입면적 (17.6㎡)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_** (수산동)	송**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_** (수산동)	송**
3	수산동	340-6	담장	콘크리트 블럭	m	15.5		인천시 남구 주안동 ****_**	성**외 2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_**	성**외 2인
4	수산동	342-2	담장	메쉬웬스	m	3.2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5	수산동	338-12	대문	디자인 웬스 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담장	디자인 웬스	m	70.2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교목	향나무 (D5)	주	15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교목	D5	주	15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교목	D1	주	100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61 (수산동)	이**
6	수산동	338-14	교목	D1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자두나무 (D5)	주	3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앵두나무 (D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대추나무 (D5)	주	1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교목	감나무 (D5)	주	2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7	수산동	338-14	옹벽	H=1.2m	m	18.2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관목		㎡	27.6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가 **_*	재단법인 ***** 유지재단

지 장 물 조 서 (2)

조서 번호	소재 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량	비 고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	수산동	338-11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15.9㎡)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0	주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담장	메쉬웬스	m	6.7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대문	메쉬웬스 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9	수산동	338-5	담장	벽돌	m	4.9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5	주	1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교목	D1	주	20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인천시 남동구 배려터로 ** (수산동)	이**
10	수산동	518-4	교목	D10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모**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모**
			교목	D5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모**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모**
11	수산동	518-5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담장	벽돌	m	4.6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교목	D15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오**
12	수산동	513-1	옹벽	H=1.5m	m	14.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주식회사 ***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주식회사 ***
13	수산동	514-3	대문	EGI웬스	개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_** ***호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_** ***호	박**
			담장	EGI웬스	m	10.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_** ***호	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_** ***호	박**
14	수산동	525-2	화단	콘크리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대한***** *****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대한***** *****
			교목	D5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대한***** *****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대한*****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11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3-4호선 : B=6.0m, L=230.0m(총 348m중)
 - 소3-5호선 : B=6.0m, L=320.0m(총 511m중)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 지 조 서 (1)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보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529-11	전	60	60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 체서피크, 체스터필드루프 *****	**** 협동조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만수동 *****~*	근저당 권자	
2	529-13	전	19	19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 ***동 *****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 코리아 주식회 사	시흥시 정왕동 *****~**	근저당 권자	
3	586-10	전	13	13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양**	인천 남동구 수산동 *****	근저당 권자	
4	586-11	도	49	49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5	538-26	전	94	94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6	538-27	도	153	153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7	538-18	대	48	48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8	538-28	전	78	78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9	538-29	전	67	67		조**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10	538-21	대	44	44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원천동지점)	근저당 권자	
11	540-6	전	13	13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12	538-17	대	17	17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번길 *-*(전동)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원천동지점)	근저당 권자	
13	538-24	대	63	63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4	540-7	전	69	69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15	540-4	전	1	1		한**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16	538-25	대	67	67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7	538-31	대	3	3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근저당 권자	
18	538-30	대	166	166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근저당 권자	

용 지 조 서 (2)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9	538-19	전	7	7		이**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번길**, *동***호(주안동, ***빌라)	****협 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약대지점)	근저당 권자	
20	539-1	전	29	29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	536-3	도	10	10		최** 외1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대우3차아파트 ***-***				
22	536-7	전	257	257		최** 외1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대우3차아파트 ***-***				
23	597-47	도	10,2 02	331		국	국토교통부				
24	535-4	전	1	1		*** 영농 조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층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25	544-3	전	30	3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26	549-2	전	104	14	90	** 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27	529-14	전	60	31	29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 ***동 ***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주 식회사	시흥시 정왕동 *****-*	근저당 권자	
28	529-12	전	193	193		한**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 체스터피크, 체스터필드 루프 *****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29	529-10	전	24	24		조**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동 ***호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				
30	587-7	전	175	175		윤**	인천광역시 남구 수산동 ***				
31	587-8	전	114	114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나동 ***호 (만수동, 남동정수사업소관사)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 권자	
32	589-1	답	3	3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33	589-2	답	32	32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34	578-8	전	100	7	93	고** 외1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동 ***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파트)	****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권자	
35	593-11	도	90	31	59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36	593-17	전	1	1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용 지 조 서(3)

소3-4,3-5호선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illegible]

지 장 물 조 서 (1)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량	비 고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수산동	529-13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옹벽	H=2.0m	m	11.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담장	디자인 웬스	m	11.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2	수산동	586-11	교목	D15	주	5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교목	D5	주	4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3	수산동	538-26	옹벽	H=1.2m	m	37.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15	주	1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5	주	1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담장	디자인 웬스	m	37.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4	수산동	538-10	창고	콘크리트 블록조	동	1	편입면적 (0.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5	수산동	538-2	대문	철제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6	수산동	538-10	교목	D20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5	주	7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7	수산동	538-18	옹벽	H=1.2m	m	24.8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조**
8	수산동	538-22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9.4㎡)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관목		㎡	5.1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_*	한**

지 장 물 조 서 (2)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량	비 고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	수산동	540-7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38.0㎡)	인천 남동구 수산동 ***	한**	인천 남동구 수산동 ***	한**
10	수산동	536-7	조경석		m	2.5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11	수산동	536-7	담장	나무헬 스	m	28.3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교목	D10	주	9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12	수산동	536-2	교목	D30	주	1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_** 대우*차아파트 ***_***	최** 외1인
13	수산동	544-3	담장	디자인 헬스	m	13.7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14	수산동	544-2	담장	능형망 헬스	m	21.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교목	D10	주	9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천**
15	수산동	529-14	담장	디자인 헬스	m	14.8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교목	D5	주	1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관목		m ²	11.6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조경석		m	9.0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인천 남동구 덕골로 *** (수산동)	차**
16	수산동	529-10	교목	D5	주	5		인천 서구 건지로 ***, ***동 **** (가좌동, *****아파트)	조**	인천 서구 건지로 ***, ***동 **** (가좌동, *****아파트)	조**
			조경석		m	11.3		인천 서구 건지로 ***, ***동 **** (가좌동, *****아파트)	조**	인천 서구 건지로 ***, ***동 **** (가좌동, *****아파트)	조**

지 장 물 조 서 (3)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량	비 고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7	수산동	587-8	담장	디자인 웬스	m	22.5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대문	디자인 웬스 출입문	개	1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10.5㎡)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인천 남동구 백범로 **, *동 ***호 (만수동, *****)	방**
18	수산동	589	담장	구조용 파이프	m	15.7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비닐 하우스	강봉조	동	1	편입면적 (13.6㎡)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 (도림동)	김**
19	수산동	578-9	간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 ***동 ***호 (남촌동, 남촌*차풍림아파트)	고** 외1인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 ***동 ***호 (남촌동, 남촌*차풍림아파트)	고** 외1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불필요한 일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일부 조례 개정(안)		비 고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변 경 (제3조 제3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업지구의 동장	불합리한 규정개선
신 설 (제3조 제5항)	-	- 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재적위원 자격명시
변 경 (제4조 제1항)	-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임기 기준마련

구 분	일부 조례 개정(안)		비 고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삭 제 (제4조 제2항)	-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불필요한 규정삭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152, FAX 453-24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구성기준 개정(안 제3조제3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 각 사업지구의 동장
- 재적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연임 ⇒ 2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시 신임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 기준 반영 및 일부 미비점 개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를 “각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5항

⑤ 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u>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 2. <u>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 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u> 3. ~ 5. (생략) ④ <u>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u> ⑤ (신설)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u>소속 5급 이상 공무원</u> 2. <u>각 사업지구의 동장.</u> 3. ~ 5. (현행과 같음) ④ < 삭제 > ⑤ <u>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② <u>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 <u>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삭제>

[참고자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3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의 일부 삭제, 위원회 개의 요건 기준 마련,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불필요한 일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일부 조례 개정(안)		비 고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삭 제 (제2조 제2호 및 제4호)	-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 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 그 밖에 지적 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근거법령 없음
변 경 (제3조 제3항)	-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	- 각 사업지구의 동장	재적위원의 표현 불합리
신 설 (제3조 제5항)	-	- 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 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재적위원 자격명시

구 분	일부 조례 개정(안)		비 고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변 경 (제4조)	-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임기 기준마련
삭 제 (제9제 2항 및 제3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지적확정 조서에 대한 결정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법령에 명시됨
변 경 (제9조 제4항)	-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개회의요건 마련
변 경 (제10조 제1항)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용어정리 및 참여 기회확대
삭 제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불필요한 규정삭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연임 ⇒ 2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회 개최 시 개의·의결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변경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토록 함.
- 위원회 운영 상 불합리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회의·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등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일부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를 “각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⑤ 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생략) 1. · 2. (생략) 3. <u>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 분쟁에 관한 조정권고</u> 4. <u>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u>각 사업지구의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u> ④ (생략) ⑤ (신설)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각 사업지구의 동장.</u>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의 재적위원 중 동장은 각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 ----- -----, <u>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u>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u>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

<삭 제>

<삭 제>

④ ~ ⑤ (생략)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지적소

관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생략)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⑤(현행과 같음)

<삭 제>제13조(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삭 제>

[참고자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의 일부 삭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일부 조례 개정(안)		비 고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삭 제 (제2조 제3호 및 제6호)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근거법령 없음
변 경 (제10조 제1항)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규정개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의 불합리한 규정 변경(안 제10조제1항)
 - “회의록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 규정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사·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를 “작성·비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u>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u> 4. (생 략) 5. (생 략) 6. 「<u>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u>」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u> 7. (생 략) 제10조(회의록 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u>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u>하여야 한다.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u><삭 제></u> 5.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회의록 비치) ① ----- ----- <u>작성 · 비치</u>-----.

[참고자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53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8.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8. 20 ~ 2015. 09. 03(14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만수5-20 03-9	우리슈퍼	엄정달	구월말로58번길 17(만수동)	
2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장서-201 0-1	세정상사	안병옥	장수로 42(장수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 2015. 8. 7.
6. 처분사유 : 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82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4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8.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82	2009.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5.8.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358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82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2012.3.28	서창남로 기준으로 순환하는 도로 의미를 인용하여 제명	2015.8.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남순환로10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9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5, 118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4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8.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남동대로72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724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4	2015.8.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9-1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5	2015.8.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23-7	2015.8.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23-5	2015.8.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0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84	2015.8.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55	2015.8.1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13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지사
2. 사 업 지 구 명 칭 :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8-4일원(327필지/144,128㎡)
4. 대 행 업 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3)로 문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어반베네치아 테라스 하우스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자:정순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765-1(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A8)
- 연 면 적 : 59,201.0518㎡
- 사업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4층, 18개동, 연립주택 298세대
- 사 업 비 : 117,495,338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15. 9. 1. ~ 2017. 7. 1.

5.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 업 명**

- 인천 논현 한양수자인 아르디에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수양종합건설(주) (대표자:이명재 외 1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1104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739-1(소래논현지구 A2블록)
- 연 면 적 : 31,710.9487㎡
- 사업규모 :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4층, 13개동, 아파트 236세대
- 사 업 비 : 60,237,607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15. 9. 10. ~ 2016. 11 30.**5.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1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8. 2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사업
- 사업 규모
 - 수익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층별	용도	면적(m ²)	비고
지하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3,442.23	
지하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904.78	
계		8,347.01	
지상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11,393.34	
	제2종근생(사무소)	205.84	용도변경
	제2종근생(제조업소)	158.46	용도변경
계		11,757.64	
지상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7,284.89	
지상3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429.39	
계		23,471.92	
합계		31,818.9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 수익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유상 임대사용자

사용자	소재지	호실	수익시설 면적(m ²)	사용용도
(사)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복지증진회 문**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1층)	25, 125, 126, 127, 129, 130, 131, 132, 133	364.3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제조업소)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2	체육용지	67,313.9	67,31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해당 없음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17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현)]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397-4번지 일원(수현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5	6	국지	165.7 (11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연장 지구내 110m 지구외 55.7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5호선	소로3-5호선	- 도시계획선 연장 변경 - 연장 : 당초(110m) 변경(165.7m) 증(55.7m)	도로의 연계 및 적절한 도로개설을 위한 노선 연장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18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경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경신)]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627-6번지 일원(경신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2	소3-3 구월동 638-1	구월동 63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516 (42)	소3-3 구월동 638-1	광3-7 구월동 627-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연장 지구내 42m 지구외 474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4호선	소로3-4호선	·노선 연장변경 L=42m→516m(증474m) ·노선 종점명 변경 구월동637→광3-7구월동 627-5	·경신지구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 - 1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의 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조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543	논현동 491-5	소로 3-1 (도림동)	일반 도로		

나. 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 로 3 - 7	• 위치:도림동 산75번지 일원 - 연장 : 543m - 폭원 : 6m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인 도림2지구로 진입하는 기존 관습상 도로인 수골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건설과(☎032-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남동문화근린공원) 결정 조서

■ 공간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남동문화 근린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구월동 1-14번지 일원	34,828	감)149	34,679	인고 제2000-128호 (2000.07.08)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남동문화 근린공원	· 공원 내 일부 도로 저축구간 · 공원시설에서 제척 · 면적 : 당초(34,828m ²) · 변경(34,679m ²), 감(149m ²)	· 공원 내 일부 현행도로가 도시계획시 설 도로로 결정됨에 저축구간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함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5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5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및 건축과(☎453-277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8.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8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서창 제5주차장 공사
- 사업 규모
 - 토지면적 1,999.6㎡, 연면적 6,800.76㎡, 건축면적 1,594.96㎡, 주차장 97대
 - 세부 연면적(단위:㎡)

		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전용 면적	주차면적	4,595.45	195.86	1,306.09	1,546.75	1,546.75	-
	근생면적	1,966.47	1,376.47	240.29	-	-	349.71
공용면적		238.84	18.49	40.22	40.22	40.22	99.69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라코아(대표이사 : 임완복)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3번길 28-41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8	주차장	1999.6	1999.6	(주)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번길 **~**	지상권	중****행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